

신고센터 소개

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,
이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로 신고하세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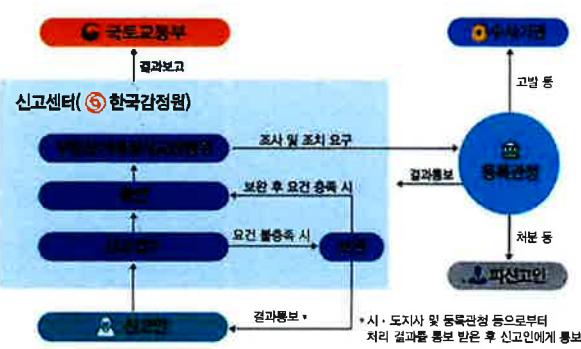
»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란?

- 입주자 모임 등이 안내문,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; 장려*
 - * 시세 또는 권장 호가를 아파트·내·외부에 게재하는 행위 포함
 - 특정 가격 이하로 거래하는 중개사무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, 특정 가격 이하 해당 중개사무소의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*
 - * 중개사의 정당한 표시·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임
 - 중개사가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반하여 친목모임* 등을 통해 가격조정을 담합하거나 저가의 허위, 미끼 매물등재
 - * 비회원에 대한 사설 중개망 차단, 공동중개 금지 등 차별

☞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지맙시다.

-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하면,
 - 공인종개사 자격정지·중개사무소 등록취소(또는 영업정지)
 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

신고처리 절차



신고 · 조회 안내



신고
방법

-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
홈페이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접수 가능
 - E-mail : cleanbudongsan@kab.co.kr
 - 우 편 : (41068)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
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

신고
절차

**홈페이지접속
(최고하기)**

▶ 본인 통합인증 ▶ 신고서 작성

신고서 제출

입증자료
처보

※ 무분별한 신고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인 통화이증 필요

조회
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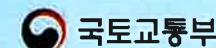
신고 후 홈페이지를 통해
신고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신고인 및 신고대상자의 신상정보와 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
공개하지 않습니다.



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

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 부탁드립니다.
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.



정부혁신
보다 나은 정부

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



**집값담합은 NO!
실고는 YES!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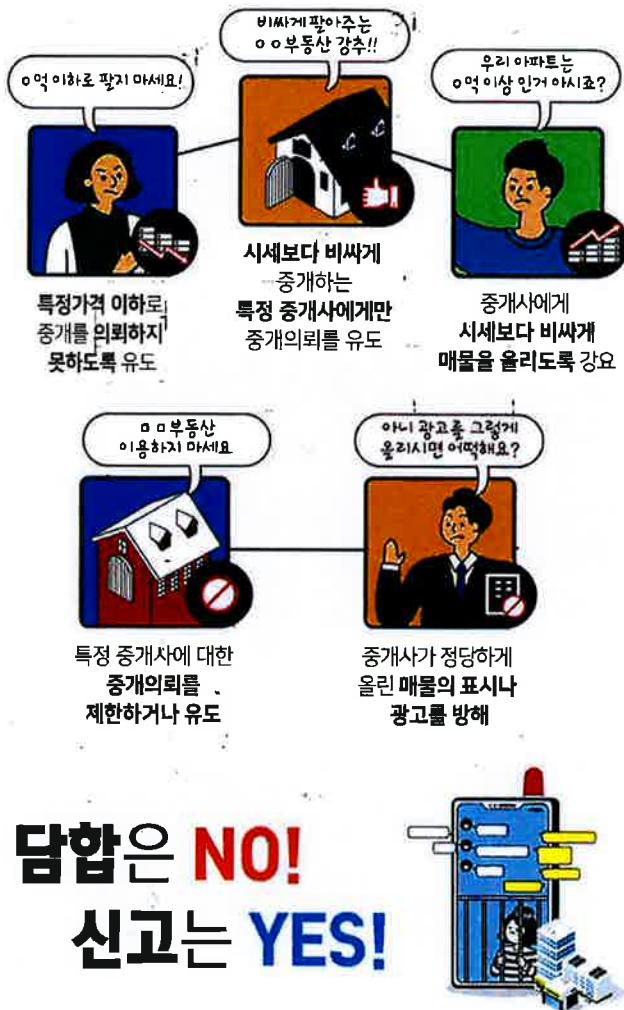
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

www.cleanbudongsan.go.kr

신고센터 상담전화

1833-432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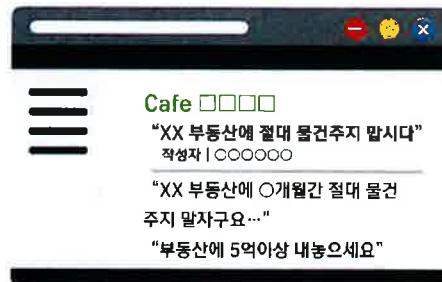
집값담합 주요사례



부동산 교란행위 NO! 신고는 YES!
당신의 적극적인 신고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듭니다!

집값담합 적발사례

1 온라인 카페에서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게시글 작성



-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“○○○”에 △△△라는 닉네임으로 “XX부동산에 절대 물건 주지 맙시다...부동산에 5억이상 내놓으세요”라는 글을 게시하여 특정 공인중개사의 증가의뢰 제한 및 특정 가격 이상으로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

☞ 공인중개사법 위반(제48조제4호, 제33조제2항제1호 및 3호)
혐의로 형사입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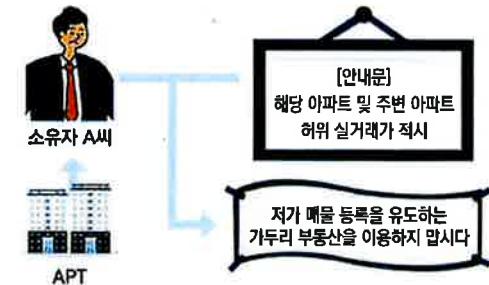


-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 “○○○”에 △△△라는 닉네임으로 “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” 등의 게시글을 작성하여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☞ 공인중개사법 위반(제48조제4호, 제33조제2항제3호) 혐의로 형사입건

당신의 적극적인 신고가
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만듭니다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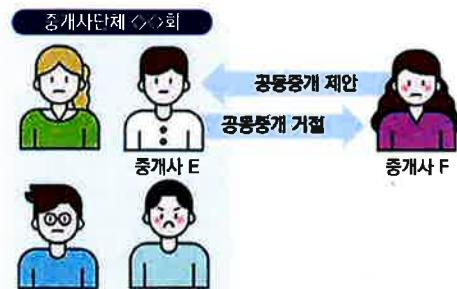
2 집값담합을 유도하는 안내문 · 현수막 게시



- 구 아파트를 소유한 A씨는 실거래가라는 이름으로 허위 가격을 적시하고 저가매물 등록을 요구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안내문 및 현수막을 게시

☞ 공인중개사법 위반(제48조제4호, 제33조제2항제3호) 혐의로 형사입건

3 중개사 단체의 공동증개 거부



- 피의자 E씨는 ○○구 중개사 단체 “◇◇회” 소속으로 피해자 F씨가 공동증개를 제안하자, 회칙 상 “◇◇회” 소속 회원이 아니면 공동 증개를 할 수 없다고 거부

☞ 공인중개사법 위반(제48조제3호, 제33조제1항제1호) 혐의로 형사입건